

장기요양보험 현황 및 이슈 진단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를 결정에 대한 검토 -

2020. 9

◀ 목 차 ▶

- I. 장기요양보험 개요 / 1
- II. 장기요양보험 재정 항목별 분석 / 3
 - ① 재정 지출 부문 / 3
 - ② 재정 수입 부문 / 6
 - ③ 당기수지 및 누적적립금 부문 / 8
- III.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를 결정에 대한 경영계 의견 / 9



I 장기요양보험 개요

□ 장기요양보험 개요

- (개요)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중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표1.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및 비용 관련 예시 >

-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시)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입욕, 휠체어 이용, 외출, 식사 등을 보조하거나 청소, 장보기, 세탁, 요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가격(30분 단위로 가격 상이)은 1시간 기준 22,310원으로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 차감되며, 본인부담금은 이용가격의 15%인 3,347원(월 이용한도액 초과 시에는 100% 본인부담)
 - * 등급별 월한도액: 1등급 149만 8,300원 2등급 133만 1,800원 3등급 127만 6,300원 4등급 117만 3,200원 5등급 100만 7,200원 인지지원등급(2018년 산설) 56만 6,600원
- (노인요양시설 이용 시)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식사·배변 등 일상생활보조, 기초건강관리, 재활, 여가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가격은 1등급 기준 1일 70,990원*이고 본인부담금은 이용가격의 20%인 14,198원 (식대, 간식비 등은 전액본인부담)
 - * 노인요양시설 인지지원등급 1일 지원액: 1등급 70,990원 2등급 64,170원 3~5등급 60,740원; 본인부담금은 지원액의 20% 수준

- (보험료 산정방식)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 소득(보수월액),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각각 인상되면서 상호 상승효과를 일으켜 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을 증충적으로 가중시키는 구조

-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2020년 건강보험료의 10.25%(장기요양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소득(보수월액) 대비로는 0.68% 수준
- (보험료 부담방식) 직장가입자는 기업과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씩 부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 자기부담
※ 2020년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월 11,424원으로 연간 137,088원 (복지부 추정치)

□ 보험료를 논의 구조

- (결정 기구)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다음 해 적용할 장기요양 보험료를 결정
- (위원 구성) 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노사 등 가입자 7인, 요양기관 등 공급자 7인, 복지부-건강보험공단 전문가 등 공익 7명으로 구성
 -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대표는 7인으로 전체 23명(위원장 포함)의 30.4%에 불과하고, 순수 보험료 부담자인 경영계는 2인(경총, 중기중앙회)으로 전체의 8.7%에 불과

< 표2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구성 >



II 장기요양보험 재정 항목별 분석

고령화, 보장성 확대 정책 등으로 급증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험료율 고율 인상으로 수입을 확대해 왔으나 수입에 비해 지출의 증가세가 매우 빨라 재정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가. 재정 지출 부문

-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17년 5.4조원에서 2019년 8.2조원으로 최근 2년(2018~2019년) 간 50.6% 급증
- 2018년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정책 추진* 이후 2년(2018~2019년) 간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연평균 22.8% 증가하여 이전 5년(2013~2017년) 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 13.2%의 1.7배에 달하는 급증세를 보임.
* 복지부,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18.2.13

< 표3. 2013년 이후 장기요양보험 지출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13	'14	'15	'16	'17	'13~'17 연평균	'18	'19	'18~'19 연평균
지출	32,915	37,399	42,344	47,067	54,139	13.2	66,758	81,579	22.8

□ 지출 급증의 주요원인

고령인구 증가, 보장성 확대에 의한 수급자 급증, 요양보호사 인건비 등 요양급여비용 대폭 인상 등의 요인이 중첩 작용하면서 보험 지출 규모도 급증

① (고령인구 증가) 65세 이상 인구는 2019년 781만명으로 최근 4년 (2016~2019년) 간 연평균 4.3% 증가하면서 장기요양보험의 수요와 지출이 자연 증가

< 표4. 전체 인구 수와 65세 이상 인구 수 추이 >

(단위 : 천명, %)

구 분	'15	'16	'17	'18	'19
전체 인구 수 (A)	51,069	51,270	51,423	51,630	51,779
65세 이상 인구 수 (B)	6,617	6,827	7,171	7,455	7,817
비중 (B/A*100)	13.0	13.3	13.9	14.4	15.1

자료 : 통계청, 총인구조사, 연도별

② (보장성 확대) 복지부가 2018년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통해 보험 수혜대상 확대, 본인 부담 경감* 확대 등 **보장성 확대정책**을 시행한 이후 보험 수급자 수와 본인 부담 경감자 수 급증

* 본인 부담금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재가입 시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시설급여 이용 시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임

< 표5.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정책 주요내용 >

구 분	세부내용
수혜대상 확대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 판정을 받아야 보험 혜택을 받았으나, 2018년부터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노인에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보험 혜택 부여
본인 부담 경감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을 저소득층(보험료 순위 25% 이하)에서 중산층 이하(보험료 순위 50% 이하, 경감률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본인부담률 최대 경감률도 50%에서 60%로 확대

자료 : 보건복지부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재구성

- 보험 수급자 수는 2019년 73.2만명으로 보장성 확대대책 시행 전인 2017년 57.9만명 대비 26.5%(15.3만명) 증가
 - ※ 보험 수급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최근 2년(2018~2019년) 간 12.5%로 이전 3년(2015~2017년) 간 연평균 증가율 10.1%에 비해 23.4% 증가

- 본인부담금 경감자 수는 2019년 26.5명으로 보장성 확대대책 시행 전인 2017년 10.9만명 대비 142.5%(15.6만명) 증가
 - ※ 본인부담 경감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최근 2년(2018~2019년) 간 62.9%로 이전 3년(2015~2017년) 간 연평균 증가율 13.8%에 비해 355.5% 증가
- 특히, 본인부담 경감액은 2019년 2,656억원으로 보장성 확대대책 시행 전인 2017년 1,003억원 대비 164.9%(1,654억원) 증가

< 표6. 2015년 이후 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수급자와 본인부담 경감자 추이 >

(단위 : 명, %, 억원)

구 분	'15	'16	'17	'15~'17 연평균 증가율	'18	'19	'18~'19 연평균 증가율
급여이용 수급자수 (증가율)	475,382 (9.6)	520,043 (9.4)	578,867 (11.3)	- (10.1)	648,792 (12.1)	732,181 (12.9)	- (12.5)
본인부담 경감자수 (증가율)	84,446 (13.8)	94,630 (12.1)	109,385 (15.6)	- (13.8)	230,664 (110.9)	265,244 (15.0)	- (62.9)

주 1. 경감자수는 각 연도말 기준의 인정자 중 경감을 인정받은 대상
 2. 감감액은 각 연도별 지급기준(1~12월)의 공단부담금 중 지급기준의 감경 수급자가 경감혜택을 받은 금액
 자료 : 건강보험공단

③ (요양서비스가격 인상) 최근 3년(2018~2020년) 간 최저임금이 연평균 10.1% 인상되면서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기 위해 요양서비스가격(요양급여비용)을 동 기간 연평균 6.5% 인상**

- 요양서비스가격의 최근 3년(2018~2020년) 간 연평균 인상률 6.5%는 이전 5년(2013~2017년) 간 연평균 인상률 2.6%에 비해 2.5배 높음.

< 표7. 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비용, 최저임금, 소비자물가의 연도별 인상률 추이 >

(단위 : %)

구분	'13	'14	'15	'16	'17	'13~'17 연평균	'18	'19	'20	'18~'20 연평균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5.0	4.3	동결	0.97	2.89	2.6	11.34	5.36	2.74	6.5
최저임금 인상률	6.1	7.2	7.1	8.1	7.3	7.2	16.4	10.9	2.87	10.1
소비자물가 증가률	1.3	1.3	0.7	1.0	1.9	1.2	1.5	0.4	0.3	0.7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통계청

나. 재정 수입 부문

□ 보험 지출 급증에 따른 재원 충당*을 위해 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수입은 2017년 5.1조원에서 2019년 7.5조원으로 최근 2년(2018~2019년) 간 47.5% 증가

* 장기요양보험은 차년도 지출액 수준을 예상하여 재원 조달 규모를 설정하는 양출제 입 방식의 재정운영 중

- 최근 2년(2018~2019년) 간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21.5%로 이전 5년(2013~2017년) 간 연평균 수입 증가율 7.9%에 비해 2.7배 높음.
- 이는 보험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하여 보험료 수입을 증가시켰고, 증가한 보험료 수입에 비례해 국고보조가 확대된 데 기인

□ 장기요양보험 수입 중 보험료 수입은 2017년 3.2조원에서 2019년 4.9조원으로 최근 2년(2018~2019년) 간 50.0% 증가

- 보험료 수입은 최근 2년간 연평균 22.5% 증가하여 이전 5년 연평균 증가율 6.9%에 비해 3.3배 급증

< 표8. 2013년 이후 장기요양보험 총 수입 및 구성요소별 규모 >

(단위 : 억원, %)

구분	'13	'14	'15	'16	'17	'13~'17 연평균	'18	'19	'18~'19 연평균
총 수입	37,472	40,439	43,253	46,635	50,846	7.9	60,657	74,977	21.5
보험료	24,969	26,612	28,479	30,506	32,328	6.9	38,474	48,506	22.5
국고지원	4,591	5,033	5,166	5,525	5,822	7.0	7,107	8,912	23.7
의료급여	7,450	8,068	8,812	9,773	12,069	11.6	14,385	16,986	18.6
기타	462	726	796	831	627	13.1	691	573	-3.4

자료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위원회

□ 보험료 수입 급증의 주요원인

최근 보험료 수입이 급증한 이유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세 가지 결정요소인 소득(보수월액),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매년 각각 인상되면서 상호 상승효과를 일으켜 직장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 수준을 중층적으로 가중시키기 때문임.

- 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임.
- 최근 3년(2018~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의 결정요소인 소득,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각각 8.0%, 9.0%, 56.5% 인상되면서 상호 상승효과를 일으켜 직장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84.1% 인상
 - ① (소득) 직장가입자 1인당 월 평균 소득(보수월액)은 2017년 332만원에서 2020년 358만원으로 최근 3년(2018~2020년) 간 8.0% 증가

② (건강보험료율) 2017년 6.12%에서 2020년 6.67%로 최근 3년 (2018~2020년) 간 9.0% 인상

③ (장기요양보험료율) 2017년 6.55%에서 2020년 10.25%로 3년 (2018~2020년) 간 56.5% 인상

< 표9. 직장가입자 1인당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의 구성요소와 전년대비 인상률 >
(단위 : %)

구분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 (A×B×C)	구성요소		
		소득 (A)	건강보험료율 (B)	장기요양보험료율 (C)
2017 (D)	13,303원	3,318,520원	6.12%	6.55%
2018	15,675원 (17.84%)	3,403,863원 (2.57%)	6.24% (1.96%)	7.38% (12.67%)
2019	19,240원 (22.74%)	3,499,848원 (2.82%)	6.46% (3.53%)	8.51% (15.31%)
2020 (F)	24,493원 (27.30%)	3,582,547원 (2.36%)	6.67% (3.25%)	10.25% (20.45%)
3년 간 인상률 < (F-D)/D*100 >	84.1%	8.0%	9.0%	56.5%

주 1.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2. 소득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평균 표준 월 급여액 활용
 3. 2020년 소득 증가율 전망치는 2017~2019년 직장가입자의 연평균 표준 월 급여액의 연평균 증가율 2.36% 활용
 4. 는 전망치이며 별도 표시가 없을 경우 확정치
 5. 표 상의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사가 각각 1/2씩 부담
 자료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위원회

다. 당기수지 및 누적적립금 부문

□ 장기요양보험은 2018년 이후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입보다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당기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누적 적립금이 급속히 소진되는 등 심각한 재정고갈 위기에 직면

- 당기수지 적자는 2017년 3,293억원에서 2019년 6,602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
- 누적 적립금은 2017년 2.0조원에서 2019년 7,097억원으로 64% 감소

< 표10. 2013년 이후 장기요양보험 당기수지, 누적적립금 추이 >
(단위 : 억원)

구분	'13	'14	'15	'16	'17	'13~'17 연평균	'18	'19	'18~'19 연평균
당기수지	4,557	3,040	909	△432	△3,233	-	△6,101	△6,602	-
누적수지	19,575	22,615	23,524	23,092	19,799	-	13,698	7,097	-

자료 : 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III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의견

-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되더라도 직장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은 건강보험료율 인상(2.89%), 임금 자연상승 등으로 인해 5% 이상 인상될 것 이므로,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동결하는 것이 타당함.
- 장기요양보험 재정건전성 문제는 수혜대상 연령 기준의 단계적 조정, 보장성 수준의 재검토, 요양관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지출구조 개편과 정부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대응해 나갈 필요

□ 지난 3년(2018~2020년) 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56.5%이며, 동기간 건강보험료 인상분, 임금의 자연증가분까지 고려한 직장가입자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률은 84.1%에 달하는 상황에서 순수 부담주체인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보험료율 인상은 수용하기 어려움.

-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 결정요소인 소득(보수월액),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매년 각각 인상되면서 상호 상승효과를 일으켜 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을 중층적으로 가중시키는 구조임.

*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건강보험료율의 6.55%에서 2020년 10.25%로 인상되면서 최근 3년간 인상률이 56.5%에 달함.
- 직장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월 평균 13,303원에서 2020년 월 평균 24,493원(추정치)으로 인상되면서 최근 3년간 인상률이 84.1%에 달해 가입자 부담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한 상황
- 이처럼 사회보험 역사상 유례없는 인상률을 감내해 온 가입자의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더 이상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은 없어야 할 것임.

□ 가입자가 부담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는 지난 8.27(목) 확정된 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2.89%)과 임금 자연상승분만 고려하더라도 이미 5% 이상 인상될 것이므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추가로 인상하여 가입자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됨.

-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결정되는 금액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되더라도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소득 상승에 따라 보험료 부담은 자연 증가함.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2.89%로 8.27(목) 결정되었고, 내년도 근로자의 소득(보수월액)이 2017~2019년 3년 연 평균 수준인 2.36%만큼 증가된다면, 2021년 직장가입자가 실제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되더라도 5.28% 자동 인상될 예정

< 표11.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를 동결시 직장가입자 1인당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 및 전년대비 인상률 추정 >

구분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 (A×B×C)	인상률		
		소득 (A)	건강보험료율 (B)	장기요양보험료율 (C)
2020	24,493원 (27.30%)	3,582,547원 (2.36%)	6.67% (3.25%)	10.25% (20.45%)
2021 추정	25,786원 (5.28%)	3,667,201원 (2.36%)	6.67% (2.85%)	10.25% (동결)

- 주 1.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2. 소득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평균 표준 월 급여액 활용
 3. 2020~2021년 소득 증가율 전망치는 2017~2019년 직장가입자의 연평균 표준 월 급여액의 연평균 증가율 2.36% 활용
 4. []는 전망치이며 별도 표시가 없을 경우 확정치,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동결 가정
 5. 표 상의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사가 각각 1/2씩 부담
 6.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2.89%로 결정되면서 이에 따른 보험료율은 6.86%로 결정됨.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율이 2020년 6.67%에서 2021년 6.68%로 인상됨에 따라 산술적으로 계산한 인상률은 2.85%

- 즉,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하더라도 장기요양보험료가 최소 5% 이상 인상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분 내에서 보험 재정을 운영해야 할 것임.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고용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이 한계상황에 있어 가입자들은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을 감내할 여력이 없음.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이 예상될 정도로 경제여건이 매우 악화되고 있음.
 - 한국은행은 코로나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3%에 그치고 최근 코로나 재확산이 계속되는 최악의 경우 -2.2%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앞으로의 경제회복은 매우 더딜 것으로 예상

○ 특히, 기업들은 코로나19발 경제충격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하반기 반등도 기대하기 어려워 한계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690개소의 연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상장사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24.2%, 34.1% 감소

-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소기업의 77%가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액이 줄었고, 매출액 하락폭은 평균 39.2%에 달함.

○ 또한 작년 GDP 대비 국민부담률이 27.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가구가 직접 벌어들이는 소득이 감소하여 국민의 보험료 부담여력 또한 한계에 직면했음

- GDP 대비 국민의 세금과 사회보장성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은 2019년 27.3%로 2014년 이후 6년 연속 상승세 기록

- 또한, 통계청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의 3대 소득원인 근로소득(-5.3%), 사업소득(-4.6%), 재산소득(-11.7%) 모두 감소

□ 따라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하여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되, 수혜대상 연령 기준의 단계적 조정, 보장성 수준의 재검토, 요양관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가고 정부 국고지원도 확대하여 재정건전화를 추구하고 나가야 할 것임.

○ 장기요양보험의 주 수혜대상은 65세 이상 인구로 향후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으므로,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보험 수혜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요양서비스도 꼭 필요한 수급자에게 필수적인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최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 급증은 급속한 고령화와 정부의 보장성 확대정책에 기인한 것이므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키기 보다는 정부의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근로인구의 부담만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한계에 직면

-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현행 보험료 예상수입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고령화 진행 속도에 맞추어 추가 상향조정할 필요

□ 장기요양위원회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핵심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하며, 순수 보험료 부담자인 경영계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 전체 장기요양보험 수입의 64.7%(2019년 기준)를 부담하는 가입자 대표가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23명(위원장 포함)의 30.4%(7인)에 불과하여 가입자 부담을 늘리는 보험료율 인상 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특히, 순수 보험료 부담자인 사용자대표는 2인으로 전체 위원의 8.7%에 불과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장기요양위원회와 정부는 지난해 부대결의를 통해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인상하기로 약속한 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악화된 기업과 국민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하는 것이 순리임.

- 2019.10.30.(수) 장기요양위원회는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를 결정 시 부대의견으로 '장기요양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2021년도 보험료가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되고, 보험재정이 건전화되도록 노력한다'고 의결

< 표12.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관련 부대의견 결의문 >

-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재정(국고지원을 20% 확보), 부당청구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 장기요양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2021년도 보험료가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되고, 보험재정이 건전화되도록 노력한다. (후략)

2020.10.30

끝.